

'97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제1차 사업계획 공고

■ '97년도 기금용자사업(1차 및 2차) 추진방향 (정보통신부)

- 기금용자사업의 조기추진
 - 1차사업 : 1월 공고후 3월 지원개시
 - 2차 사업 : 4월 공고후 6월 지원개시
- 중소기업 및 신세대기업군 중점지원
97년도 총 용자지원규모(3,410억원)의 76% (2,590억원) 이상이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 SW, 신규통신사업자용 장비, 방송, 멀티미디어 기술등 취약기술 중점지원
 - SW분야 700억원(게임산업 100억원 포함) 이상
 - PCS, 디지털TRS 등 신규통신사업자용 장비개발 390억원등
- 기금지원방식상의 특징
 - 정보통신설비 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계정구분에 따라 정보화추진분야 400억원, 연구개발분야 200억원으로 구분, 지원
 - 국산주전산기 보급. 확대 지원사업은 현행 지원방식으로 97년까지 지원

■ '97년도 정보화촉진기금 제1차 사업계획 공고 ('97. 1. 17)

■ 지원사업

- 정보통신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200억원)
 - 정보화촉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400억원)
- 정보통신기술개발지원사업(1,500억원)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기 간 : 1997년 1월 23일~1997년 2월 13일
- 교부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
 - TEL : 042)860-1211~7
 - FAX : 042)860-1013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서울사무소
 - TEL : 02)587-7001
 - 기금취급은행 본점
- 접수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부설 정보통신연구관리단
 - 한국전자통신연구소 서울사무소

■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97. 1. 21. (화) 14 : 00 ~ 16 : 00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1층)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비 지원사업

지원분야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분야
 - 멀티미디어기기(방송, 영상기기)
 - 통신기기(유선, 무선통신기기)
 - 정보기기(컴퓨터본체, 주변기기)
 - 부품(능동, 수동, 기구부품)
 - SW 및 SW(게임 포함) 개발용 기기
- 지원대상 : 중소기업. 단, 잔여분 발생시 지원 대상 확대

■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분야 : HW, SW 구입 및 네트워크(LAN, CALS등) 구축
- 지원중점 : 중소기업 우선지원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6.5%
-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한도 : 동일인 한도 20억원 이내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80% 이내

■ 지원대상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연구개발 능력향상 및 환경구축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설비구입비와 연구시설을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기업등에 지원

-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공장자동화(전산화)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HW, SW를 구입하거나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네트워크(LAN, CALS등)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기업등에 지원

* CALS : 기업활동 지원정보시스템

■ 지원규모

- '93년도 : 100억원
- '94년도 : 195억원
- '95년도 : 410억원
- '96년도 : 600억원
- '97년도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200억원
 - 정보화추진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 400억원

■ 비목별 산정기준

- 연구개발을 위한 설비구입 및 시설개체
연구개발 능력향상 및 환경구축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설비구입비와 연구시설을 개체하는데 필요한 자금(단가 1백만원 이상인 경우 건적서 첨부)
- 정보화 추진을 위한 HW, SW 구입 및 개체
 - 정보화추진 등을 위하여 HW, SW를 구입 및 개체 또는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하거나 전기통신역무 및 전산망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설비현대화를 위하여 각종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기계장치 등을 구입 및 개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단가 1백만원 이상인 경우 건적서 첨부)
 - 정보화추진을 네트워크(LAN, CALS등) 구축

(네트워크를 구성하거나 구성된 네트워크를 개체하는 경우)

〈 자체시공 〉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각종 HW, SW등 장비, 시설 및 재료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단가 1백만원 이상 견적서 첨부)

〈 도급공사 〉

네트워크 구성에 소요되는 공사비(장비 및 시설구입비,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로서 도급공사 견적서에 근거한 금액에 한함(견적서 첨부)

* 국산시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시설 구입가격으로 하고, 외국산시설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CIF 및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기술개발지원사업

■ 지원분야

- 멀티미디어기술
- SW기술(게임 및 인터넷SW 포함)
- DB기술
- 컴퓨터 및 주변기기기술
- 전파·방송기술
- 통신시스템기술
- 반도체기술
- 부품기술(통신, 방송, 정보등)
- 정보통신서비스기술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연 6.5%(중소기업은 연 6.0%)
- 융자기간 :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 지원한도
 - 과제당 한도 : 10억원이내
 - 동일인 한도 : 20억원이내
- 지원비율 : 소요자금의 80%이내

■ 지원대상

○ 산업적연구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맺고 있는 고등교육 기관이나 연구소가 신제품, 신공정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현저하게 개선하는데 유용한 지식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계획된 연구, 조사

○ 경쟁전단계개발

- 산업적연구의 결과를 판매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제품, 공정,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계획, 청사진 또는 디자인으로 전환하는 개발

- 대체적인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관한 개념화, 디자인 및 최초의 시범과 시제품의 개발을 포함하되, 동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기존의 제품, 생산라인, 제조공정, 서비스 및 기타의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비록 그 변경을 통해서 개선이 된다고 할지라도 포함되지 않음

* 상업화개발은 지원을 제외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시 경쟁전 단계개발까지 작성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선지원대상

다음 각호의 경우에 지원대상사업중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유망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려는 사업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려는 사업 및 연구기관등이 위탁연구로 참여하여 수행하려는 사업(공동연구개발사업)(단 동일계열기업간 공동연구는 제외하며,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및 대학에 한함)

- 공동연구개발사업 인정범위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 공동연구개발사업은 주관기관을 제외한 참여기관이 전체사업비의 30%이상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지원규모

- '93년도 : 200억원
- '94년도 : 800억원
- '95년도 : 950억원
- '96년도 : 1,100억원
- '97년도 : 1,500억원

■ 비목별 산정기준

- 연구인력인건비
 - 실제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인력의 지급액
 - 사무직원 인건비등은 제외
 - 사업책임자가 임원 또는 연구소장일 경우 참여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충원에정인 연구인력인건비는 충원확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 견본비 및 재료비(단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 첨부)
 - 견본비
연구개발과정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타사 제품의 연구·분석등 개발을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견본을 구입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주·보조 재료비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최소한의 주·보조 재료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금형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금형구입비 또는 금형제작을 위해 구입하는 재료비
-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외로부터 도입하는 기술의 대가(경상기술료 제외)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과제당 최고한도는 전체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위탁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을 위하여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과 체결한 위탁연구개발계약에 의하여 이들 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개발비로서 총연구개발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토록 함
- 기타경비
연구개발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여비, 교육훈련비, 시험검사비, 기술지도비, 도서 등 문헌·정보수집비, 유인물비, 회의비, 통신비등의 최소한의 경상비 성격의 경비
- 연구개발용 기자재비
 -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험용 기구와 기자재 등의 구입비 및 임차료
(단가 5천만원 이상인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견적서 첨부)
 - 국산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구입가격으로 하고, 외국산제품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CIF 및 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

